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8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윤준병의원안)	3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8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24.
- (3) 회 부 일 : 2024. 10.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

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1항) ○ 세액공제 요건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에 출연 ③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④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②의 경우 50% ○ 적용기한: <u>2030. 12. 31.</u> ○ 시행일: 2025. 1. 1.

* 윤준병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84)

☐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0%로 40%p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조의3제1항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농어업 인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요건: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7% - 적용기한: 2013. 12. 31.
2014년	- 적용기한 연장: 2016. 12. 31.
2017년	- 공제율 상향: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연장: 2019. 12. 3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2020년	- 공제요건 신설: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적용기한 연장: 2022. 12. 31.
2022년	- 공제요건 신설: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2025. 12. 31.

동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주요사업은 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¹⁾,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²⁾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³⁾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⁴⁾, ③ 상생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⁵⁾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사업⁶⁾, ④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지원사업⁷⁾이 있음.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⁸⁾는 2023년 실적치 기준 약 409억원이며, 조세지출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다만, 2024년에는 조세지출이 296억원으로 감소하고, 2025년에는 310억원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1)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보증기관은 이를 기초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 2) 대기업이 협력재단에 협력중소기업과 지원사업을 지정하여 출연금을 내고, 협력재단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
 -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 5)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 공제,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7%) 공제, 시설 등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10% 공제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0	0	0.8	0.5	0.5	0.2	0.2
법인세	179	202	212	329	408	295	309
합계	179	202	213	329	409	296	310

주: 2024년,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향상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3.5%p로 증가하였음.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54.7%로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2014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현황]

(단위: %p,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영업이익률 차이	1.5	1.3	2.0	2.6	3.6	3.7	1.4	1.3	3.5
임금격차	53.8	53.2	54.5	54.9	56.2	53.1	55.5	57.8	54.7
연구개발비 비중	18.2	17.6	18.5	19.0	17.4	18.0	18.7	19.4	19.8

주 1) 영업이익률 차이(%p) = 대기업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2) 임금격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3) 연구개발비 비중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e-나라지표

개정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선제적으로 2027년 말까지 연장하면 기업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출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상향하면 기업의 출연금이 늘어나고 협력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동 세액공제에 대한 2019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세액공제의 기금출연 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그리고 심층평가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협력기업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임금 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영여건의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 지출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내국세 수입이 법인세 감면액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셋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출연을 늘리도록 기업에 유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농어촌

9) 한국개발연구원,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2019.9.

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농어가 수 및 농어가 인구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촌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농가 및 어가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가수 (천호)	1,121	1,089	1,068	1,042	1,021	1,007	1,035	1,031	1,023	999
농가인구 (천명)	2,752	2,569	2,496	2,422	2,315	2,245	2,314	2,215	2,166	2,089
- 65세 이상 비중(%)	39.1	38.4	40.3	42.5	44.7	46.6	42.3	46.8	49.8	52.6
어가수 (천호)	58.8	54.8	53.2	52.8	51.5	50.9	43.1	43.3	42.5	41.8
어가인구 (천명)	141.3	128.4	125.7	121.7	116.9	113.9	97.1	93.8	90.8	87.1
- 65세 이상 비중(%)	32.2	30.5	32.5	35.2	36.3	44.7	36.0	40.5	44.2	48.0

자료: e-나라지표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촌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사업,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동 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업의 기금 출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2025년에 3년간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용기한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할 경우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에 대해 각 부처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설계 및 운영에 고려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¹⁰⁾

둘째,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23년 기준 총 2조 6,563억원이 출연되어, 전년대비 3,870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을 통해 누적 2조 1,422억원이 지원되었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23년 기준 총 2,257억원이 출연되어, 전년대비 3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을 통해 누적 1,751억원이 지원되었음.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단위: 억원, 누적기준)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	10,067	12,074	14,626	18,330	22,693	26,563
	지원금액	8,132	10,146	12,491	15,362	18,217	21,42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	-	780	1,143	1,598	1,953	2,257
	지원금액	-	499	774	1,063	1,376	1,751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이와 같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출연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상향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등 유사 목적의 출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비해 차별적인 조세특례를 제공할 만큼 공익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155